

현·시정촌 연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 방지 협력 기업 등 특별지원 사업(예정)에 관해서

(주) 이 협력금은 2020년 4월 보정예산이 나가노현 의회에서 가결된 경우에 실시합니다.

※아래 내용은 예정입니다. 수시로 정보를 갱신해 가겠습니다. <2020년 4월 22일 10시 현재>

사업 개요

-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를 위한 나가노현의 긴급사태조치 등에 따라 휴업 요청 등에 응한 사업자에 대해 협력금 등을 지급합니다.
- 취급은 사용정지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현이 시설의 사용정지(휴업) 등 요청을 하는 4월 23일(목요일)부터 긴급사태선언 발령 기간(5월 6일(수요일)까지)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4월 24일(금요일)부터 5월 6일(목요일)까지의 전 기간 협력해 주실 수 있는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.

지급하는 협력금 등 및 대상자

1 현·시정촌 연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 방지 협력금

- 신종플루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제 24조 제 9항을 토대로 하는 현의 요청에 협력해서 시설의 사용정지(휴업) 등을 한 아래의 사업자
 - (1) 현내에 시설을 소유하며, 해당 시설의 사용정지(휴업)를 실시한 사업자
(시설 예: 유흥시설 등, 운동 시설, 유희 시설 등, 극장 등)
 - (2) 현내에 식사 제공 시설을 소유하며, 해당 시설의 영업시간 단축 등과 주류 제공 시간

제한을 실시한 사업자(종일 시설 사용정지를 한 사업자 포함.)

(주) "영업시간 단축 등과 주류 제공 시간 제한"이란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
자숙을 하고, 주류 제공은 밤 7시까지까지로 할 것.(택배, 테이크아웃은 제외.)

2 현·시정촌 연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 방지 지원금

- 현내에 주로 관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집회·전시 시설, 관광·숙박 시설 등을 소유하며,
현으로부터의 관광 왕래의 자숙 요청에 협력해서 해당 시설의 휴업을 실시한 사업자

협력금 등의 금액

- 1사업자당 30 만엔[1 회 한정]

※시정촌과의 협조 사업(내역: 현 20 만엔, 주요 사업소가 있는 시정촌 10 만엔)

기타

- 현외에 본사가 있는 사업자로 현내에 상기 시설을 소유하는 분에 대해서도 시설 사용정지 등의
요청 등 및 협력금 등의 대상이 됩니다.

향후의 흐름(예정)

•모집 요강 공표 4 월 30 일(목요일)

•접수 개시 5 월 7 일(목요일)~2 주일 정도

•지원금의 지급 5 월 하순~

·신청 방법 우송

※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지만, 지급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.

또한, 감염 예방을 위해 지참해서 신청하시는 것은 삼가 주시기를 사전 양해 바랍니다.

신청에 필요한 서류

	서류명	비고
(1)	지급 신청서	법인인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"법인번호"를 기입
(2)	영업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	확정신고서, 신규 개업인 분은 개업 신고서, 휴업 전의 경리장부 등의 사본 등
(3)	휴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사업 수입액을 표시한 장부 사본, 휴업 고지한 홈페이지 · 점포 고지 전단지 사본 등
(4)	서약서	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허위가 없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명하는 것

문의처

협력금에 관한 전문창구를 설치합니다.

시설 사용정지(휴업) 요청 등(대상 시설의 지정 등)에 관련된 전화상담 창구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전화번호 092-687-7890

상담 접수 시간 7시 00 분~22시 00 분(휴일 포함)